법제처, 항만·물류 산업 성장을 위한 법제 지원

– 항만·물류 산업 관계자,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요청

■ **법제처**(처장 김외숙)는 2월 23일 부산을 직접 찾아 부산항만·물류센터 관계자 및 부산항 보안관리자들과 '항만·물류 산업의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 수렴'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.

●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,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포함해 항만 및 물류 관련 주요 기관* 관리자 10여명이 참석했다.

* 부산항만공사, 항만산업협회, 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, 부산항발전협의회, 부산항보안공사

● 참석자들은 항만이나 물류에 관한 법·제도가 항만·물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.

■ **주요 의견으로는,**

● 북항 재개발사업을 계기로 구 연안여객부두 일원을 연안크루즈터미널로 조성하고, 연안크루즈 사업*을 통해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,

* 연안크루즈 사업: 중간기항지에 승 · 하선이 가능한 부정기여객선과 중간기항지가 없는 연안유람선 운항

– 관광목적의 경우에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부정기여객선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「해운법」을 개정하거나,



- 연안유람선도 중간기항지에서 운송목적의 승하선이 가능하도록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.

● 또한, 현재 「항만공사법」 상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는 항만시설의 조성·관리·운영에 치중되어 있는데, 해외 물류거점 확보 사업도 가능하도록 사업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.





■ 김외숙 처장은 “항만·물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화된 경쟁 환경에 맞춰 법·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”하다며,

● “제안된 의견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항만과 물류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법제처, 제10기 어린이법제관 수료식 개최

– 법안 만들기, 법령퀴즈 골든벨 등 1년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

■ **법제처(처장 김외숙)는 2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총 105명의 어린이법제관과 함께 '제10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'를 가졌다.**

● 이번 행사는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정리하면서 앞으로도 준법정신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다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.





■ 제10기 어린이법제관들은 그간의 활동 영상을 함께 보고, 소감문 발표를 통해 감상을 공유하며, 다음 기수의 어린이법제관에게 영상 편지를 쓰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해 활동을 마무리했다.

■ 특히,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1년 간 법안 만들기 대회, 법령퀴즈 골든벨 등 다양한 입법체험행사에 참여하고, 온라인 활동도 열심히 한 총 39명의 어린이법제관에 대해 우수 어린이법제관 시상을 했다.

● 우수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된 판곡초등학교 6학년 김예원 학생은 “법안을 만들고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법과 친해질 수 있었고, 나와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”며,

– “앞으로도 어린이법제관답게 준법정신을 갖고 친구들에게 올바른 법을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



■ 김외숙 처장은 “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입법체험활동을 즐기며 법에 대해 더욱 친숙하게 느끼게 된 것 같아 법제처장으로서 기쁘고 뿌듯하다”며,

● “법안을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을 되새겨 앞으로도 법의 중요성을 잊지 않길 바라고, 좋은 법이 만들어지도록 법제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”고 밝혔다.

■ 한편, 법제처는 전국의 초등학교 4 ~ 6학년 어린이(새 학기 기준)를 대상으로,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(http://www.moleg.go.kr/child)를 통해 제11기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한다.

「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」 국무회의 통과

– 법제처, 법령정보의 통합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

■ 법제처(처장 김외숙)는 3월 20일 「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」(제정안)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■ 이번 법률안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률·대통령령·부령 등 '법령'과 입법예고안·규제영향분석서 등 '법령과 관련된 정보'를 통합해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
● 이를 통해 국민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법령과 법령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
■ 「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● 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 · 관리 및 제공을 위해 법령정보의 수집 ·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다.

● 법제처장은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하거나, 관보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법령정보*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.

*** 통합해 수집·관리 및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종류**

– (법령 등) 헌법, 법률, 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, 조약,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, 자치법규(조례·규칙 등), 행정규칙(훈령·예규·고시 등)

– (법령과 관련된 정보) 헌법재판소 결정례, 행정심판 재결례, 법제처 법령해석례, 입법예고안, 규제영향분석서, 비용추계서 등

● 또한,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*을 구축·운영해야 한다.

* 현재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를 통해 법률, 대통령령, 조례, 행정규칙 등의 법령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, 향후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에게 제공하는 법령정보를 점차 확대할 계획

● 아울러 법안에는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·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내용도 담겼다.

● 또한, 법령정보를 가공·활용하는 기업에 정보를 개방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법령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.

■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률이 시행되면 "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들을 체계적·전문적으로 수집·관리해 국민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"이라면서,

● "법률을 기반으로 관계 기관과 협조해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법령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■ 한편, 법제처는 3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, 국회 제출 후 적극적 설명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.

※ 붙임: 「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」 주요 내용

붙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

■ 주요 내용

● 법령정보 수집·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(제4조)
- 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·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법령정보의 수집·관리 및 제공 정책의 기본방향, 목표 및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

● 법령정보 수집 및 관리·제공(제5조 및 제6조)
- 법제처장은 관보를 통해 법령정보를 수집하거나, 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공동활용 등의 방법에 따라 수집함
-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

● 대국민 개방·소통을 위한 법령정보서비스 규정(제8조 및 제9조)
- 법제처장은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·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함
-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·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
-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주제별·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음
- 법령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·제공하는 민간업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음

● 외국법령정보의 수집·제공 및 국제협력(제11조 및 제12조)
- 외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
-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기술 등을 외국에 소개하고 보급·전수하는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